

융합전공 운영 지침

2014. 3. 1 제정

2016. 1. 1 일부개정

2019. 3. 1 일부개정

2021. 9. 1 일부개정

2023. 10. 1 일부개정

2024. 9. 1 일부개정

<학사팀>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119조에 따라 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.9.1.>

제2조(융합전공의 개설) ① 융합전공은 매 학년도마다 교무처가 정하는 기간에 개설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(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 학과 포함)가 융합하여 개설하여야 하며(학부과정의 학과 반드시 포함), 필요시 타 대학교의 학과를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0.01>

③ 융합전공 운영에 참여할 교수들로 융합전공협의회를 구성하고, 행정사항을 지원하는 주관대학(원) 또는 주관기관을 정한다. <개정 2023.10.01>

④ 주관대학(원) 또는 주관기관은 소정의 융합전공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. <개정 2023.10.01.>

제3조(융합전공협의회) ① 융합전공협의회는 전공운영에 참여하는 학과의 전임 교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주임교수이다.

② 융합전공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.

1. 융합전공 개설 신청
2. 융합전공 주임교수 추천
3. 주관대학(원) 또는 주관기관 선정 <개정 2023.10.01>
4. 교육과정 편성
5. 교육과정 운영
6. 융합전공 신청자격
7. 융합전공 신청자 선발
8. 졸업자 선발 및 졸업사정
9. 그밖에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③ 제2항 각 호에 관한 결정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조(행정지원과 조교) ① 주임교수는 해당 융합전공의 제반사항을 관리·운영하며, 주관대학(원) 또는 주관기관은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. <개정 2023.10.01>

② 융합전공 운영을 위하여 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과정의 편성) ① 교과목 편성은 전공필수과목(12학점 이하) 및 전공선택과목으로

총 54학점 이상으로 편성하며, 「교육과정 편성·운영 시행세칙」 제19조를 준용한다.

② 교육과정 편성교과목은 융합전공에 참여한 학과(부)에서 개설한 과목을 원칙으로 하며, 참여하지 않은 학과(부)의 개설교과목도 포함할 수 있다. 교과목 편성 시 교과목 개설학과(부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4.9.1>

③ 융합전공 자체 교과목은 최대 9학점까지 신설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9학점을 초과하여 신설할 수 있다.

1. 현장실습 교과목
2. 재정지원사업 수행 등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신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<개정 2023.10.01>
- ④ 융합전공 교과목의 신설·변경·폐지에 관해서는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시행세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. <개정 2023.10.01>

제6조(학점이수) 융합전공 학생의 최소이수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.

제7조(융합전공의 폐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합전공은 폐지의 대상이 되며, 교무처에서는 해당 융합전공을 심의한 후 폐지한다.

1. 3학기 연속 신청학생이 5명 이하인 경우
 2. 전공운영 중 연속 3년간 신청학생의 누적인원이 30명 이하인 경우
 3. 그밖에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
-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융합전공운영활성화계획을 제출받아 폐지를 유보할 수 있다(폐지유보의 결정은 1회에 한함)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지침의 시행에 따라 「연계전공 운영지침」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(제6조 개정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개정조항: 제5조제1항, 제5조제2항, 제5조제3항, 제5조제4항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.(별지서식 개정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(개정조항: 제2조, 제3조, 제4조 및 제5조, 삭제조항: 별지서식)
2. (적용례) 에너지신산업융합전공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2021년 11월 30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이 지침은 2024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.(제1조, 제5조 개정)